##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76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최형두·윤한홍·윤창현

김정재 · 윤영석 · 이철규

강기윤 · 정운천 · 김영식

이명수 · 권명호 · 김도읍

권영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달팽이 경주, 사다리 게임,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6명은 도박중독으로 조사됐고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에 달했으며, 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수가 2014년 65명에서 2019년에는 1,236명으로 급증했음.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도박 중독의 예방, 성교육"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	
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	
남용(濫用)의 예방, <u>성교육</u> , 정	<u>도박 중독의</u>
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	예방, 성교육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